

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변 호	관련 1886
--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년 6월 27일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본 개정안은 의용소방대 중 ‘본대의 부장’만 대상으로 임기와 연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 논란을 야기 할 수 있는 바 ‘지역대 및 전문대의 부장’까지 포함하는 한편, 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에 부장을 추가하여 임명과 연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
- 안 제7조제1항의 신설보다는 현행 제7조제1항과 제2항 중 ‘지역대장 및 전문대장’에 ‘부장’을 추가하고 부칙에 ‘부장에 대한 경과조치’를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개정안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현행 제7조제1항의 임기와 연임 대상과 같은 조 제2항의 심의 대상에 ‘부장’을 추가함.(안 제7조제1항과 제2항)
- 나. 부칙에 ‘부장에 대한 경과조치’를 신설함.(안 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 : 생 략

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면서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2항) 중 ‘지역대장 및 전문대장’을 ‘지역대장, 전문대장, 부장’으로 한다.

같은 조 제2항(중전의 제3항) 중 ‘지역대장, 전문대장’은 ‘지역대장, 전문대장, 부장’으로 한다.

안 부칙의 조번호와 제목을 ‘제1조(시행일)’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부장에 대한 경과조치) 제7조의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부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시행일을 최초 임명일로 본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7조(대장 등의 임기) <u>〈신설〉</u>	제7조(대장 등의 임기) ① <u>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중 지역대 및 전문대를 제외한 의용소방대의 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	제7조(대장 등의 임기) <u>〈삭제〉</u>
① <u>지역대장 및 전문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	② (현행 제1항과 같음)	① <u>지역대장, 전문대장, 부장의</u> ----- ----- -----.
② <u>지역대장, 전문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장이 임명한다.</u>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	② <u>지역대장, 전문대장, 부장은</u> ----- ----- --.
	부 칙	부 칙
	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	<u>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
	<u>〈신설〉</u>	<u>제2조 (부장에 대한 경과 조치) 제7조의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부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시행일을 최초 임명일로 본다.</u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지역대장 및 전문대장의”를 “지역대장, 전문대장, 부장
의”로 한다.

같은 조 제2항 중 “지역대장, 전문대장은”을 “지역대장, 전문대장, 부장
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장에 대한 경과조치) 제7조의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부장으
로 임명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시행일을
최초 임명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대장 등의 임기) ① <u>지역대장 및 전문대장의</u>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	제7조(대장 등의 임기) ① <u>지역대장, 전문대장, 부장의</u> ----- -----.
② <u>지역대장, 전문대장은</u>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장이 임명한다.	② <u>지역대장, 전문대장, 부장은</u> ---- ----- ----.
〈신 설〉	부 칙
	<u>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</u>
	<u>제2조 (부장에 대한 경과조치) 제7조의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부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시행일을 최초 임명일로 본다.</u>